

1. 서언

디지털자산, 그중에서도 특정 통화나 자산의 가치에 연동되도록 설계된 스테이블코인은 더 이상 암호자산 거래소 내부의 결제수단에 머물지 않고, 국경을 넘는 지급·송금과 자본시장의 인프라로 빠르게 편입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 영국,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은 각기 다른 속도와 방식으로 디지털자산 및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체계를 정비하고 있으며, 최근 1~2년 사이 그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유럽연합은 2024년 암호자산시장법(Markets in Crypto-Assets Regulation, 이하 'MiCAR')을 전면 시행하는 단계에 있고, 영국은 2026년 새로운 암호자산 규제를 도입하는 법령을 확정하였으며, 미국은 2025년 결제형 스테이블코인에 관한 GENIUS법을 제정한 데 이어 디지털자산 시장구조 전반을 규율하는 CLARITY법의 상원 통과 여부를 다두고 있다. 일본은 반대로 암호자산 규제의 축을 지급결제법제에서 금융상품거래법제로 옮기는 근본적인 전환을 단행하였다.

우리나라 역시 22대 국회에 디지털자산 관련 규제법안 8건이 제출되어 있어, 조만간 관련 입법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시점에서 해외 주요국의 규제 동향, 특히 시행 이후의 실제 상황과 각국이 직면한 쟁점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전략 수립은 물론, 국내 입법의 설계방향을 가늠하는 데에도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유럽연합, 영국, 미국, 일본의 순으로 디지털자산규제법에 관한 최근 동향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그 합의를 정리하기로 한다.

2. 주요국의 디지털자산규제 동향

가. 유럽연합(EU)

(1) MiCAR의 주요 내용

MiCAR는 디지털자산을 '암호자산(crypto-assets)'으로 명명하고, 이를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일반암호자산, 자산준거토큰(Asset-Referenced Token, ART), 전자화폐토큰(E-Money Token, EMT)으로 구분한다. 이 중 이른바, '스테이블코인'에 해당하는 것이 ART와 EMT인데, 전자화폐토큰은 단일 법화에 연동되어 사실상 그 통화를 대체하는 기능성 디지털자산으로서 전자화폐기관 또는 신용기관(은행)만이 발행할 수 있다. 그리고 자산준거토큰은 복수의

통화 또는 하나 이상의 상품 등에 연동된 디지털자산으로서 별도의 인가를 받은 발행인만이 발행할 수 있다. 일반암호자산은 별도의 인가 없이 백서를 제출하고 발행할 수 있어, 스테이블코인에 비해 상당히 완화된 형태로 암호자산을 발행할 수 있다. 아울러 MiCAR는 암호자산서비스를 보관·관리업, 거래플랫폼운영업, 자금과의 교환업, 주문집행업, 인수·주선업 등 10종으로 세분하고 위험도에 따라 3단계로 재분류하여 5만 유로에서 15만 유로까지 차등화된 자기자본을 요구한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에 대하여는 발행잔액에 상응하는 준비자산을 안전자산으로 보유하고 이를 고유재산과 분리할 의무, 그리고 이자 등의 지급을 금지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¹⁾

(2) 시행 이후의 상황과 쟁점

MiCAR상 스테이블코인에 관한 조항은 2024년 6월 30일부터, 나머지 조항은 2024년 12월 30일부터 각각 시행되었다. 2026년 3월 기준으로 유럽 전역에서 19개의 전자화폐토큰(EMT) 발행인이 인가를 받아 29개(17 EUR, 9 USD, 1 CZK, 1 GBP, 1 CHF)의 전자화폐토큰이 발행된 반면, 자산준거토큰(ART)에 대한 인가 사례는 시행 이후 2년이 지나도록 전무한 것으로 파악된다. 인가를 부여한 11개 국가 중 프랑스가 5개사에 부여하여 프랑스에 상당히 편중되어 있는데, 이는 프랑스 금융당국(AMF)이 상대적으로 신속한 인가절차를 운영해 온 결과이다.²⁾ 암호자산업자에 대한 인가는 아직 경과규정에 따라 인가를 받아야 할 마감시간이 남은 국가도 있어 2026년 3월 현재 40개사가 암호자산업자로 인가를 받았다.³⁾

MiCAR의 시행 이후, 집행 측면에서는 2026년 초까지 5억 4천만유로가 넘는 과징금이 부과되고 50건 이상의 라이선스가 취소되는 등 감독당국의 집행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MiCAR 인가를 받지 못한 테더(USDT)와 같은 글로벌스테이블코인은 유럽 역내 규제 준수 암호자산거래소에서 순차적으로 상장폐지되는 추세이며, 유럽 역내에서 유통되는 스테이블코인 중 MiCAR를 준수하는 것은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러한 역내 상장폐지에도 불구하고 테더의 글로벌 유통 규모 자체에는 뚜렷한 변화가 관측되지 않아, MiCAR의 역외적 영향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⁴⁾

이처럼 시행 초기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EU집행위원회는 2026년 5월 MiCAR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개시하였다.⁵⁾ 동 의견수렴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이자지급 전면 금지가 유로화 스테이블코인의

1) Regulation (EU) 2023/111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1 May 2023 on Markets in Crypto-Assets (MiCAR), Titles III·IV·V 참조. MiCAR에 관한 국내문헌으로는 심인숙, EU 암호자산시장법(MiCA)에 관한 고찰 - 암호자산 규제법으로서의 포괄성과 그 한계를 중심으로 -, 중앙법학 제25권 제4호, 2023, 205면 이하; 김흥기, “EU의 암호자산시장규정(MiCA)과 우리나라 디지털자산법의 제정방안”, 상사법연구 제41권 제2호, 2022, 333면 이하; 천창민, “유럽 암호자산시장법 연구”, 상사법연구 제43권 제1호, 2024, 139면 이하 참조.

2) MiCAR Q1 2026 분석에 따르면 2026년 3월 기준 EMT 발행인 19개사가 인가되었고 ART는 0건이며, 프랑스가 EU 스테이블코인 발행 인가의 약 26%를 차지한다(thefutureofmoney.substack.com, MiCA Regulation Q1 2026: EU Stablecoin Compliance Guide, March 13, 2026).

3) thefutureofmoney.substack.com, 위의 자료.

4) MiCAR 시행 이후 5.4억 유로 이상의 과징금과 50건 이상의 라이선스 취소가 있었으며, 상위 50대 스테이블코인 중 MiCAR를 준수하는 것은 3종(USDC, USDG, EURC)에 불과하다(thefutureofmoney.substack.com, 위의 자료).

5) European Commission, Targeted Consultation on the Review of MiCAR(2026. 5. 20 개시, 2026. 8. 31 ~ 9. 30 마감).

경쟁력을 저해하는지 여부, 디파이(DeFi), 스테이킹, 렌딩 등 MiCAR가 규율하지 않는 영역을 새롭게 포섭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그리고 제3국에서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이 여러 국가에서 동시에 발행되는 이른바 ‘다중발행 구조’⁶⁾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 등 86개 항목에 이르는 광범위한 질문을 담고 있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이 논의에서 제3국-EU 간 다중발행 구조를 현행 MiCAR상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이른바 ‘MiCAR 2.0’을 둘러싼 논쟁이 이제 막 시작된 상황이다.⁷⁾

나. 영국

영국은 그동안 암호자산에 대하여 자금세탁방지 및 금융프로모션규제 등 제한적인 규제만을 적용하여 왔으나, 2026년 2월 의회가 ‘2000년 금융서비스시장법(암호자산) 규정 2026’⁸⁾을 통과시켜 본격적인 인가제 규제를 도입하였다. 이 규정은 매매(dealing), 중개(arranging), 거래플랫폼운영, 보관(safeguarding), 스테이킹, 알선, 적격 스테이블코인(Qualifying Stablecoin, QS) 발행 등을 새로운 규제행위로 신설하고, 이러한 행위를 영위하는 자에게 금융행위감독청(FCA)의 인가를 요구한다. 다만 위 규정의 실질적인 시행일은 2027년 10월 25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FCA는 이에 앞서 2026년 9월 30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인가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⁹⁾

특히 주목할 부분은 영국 재무부(HM Treasury)가 2026년 4월 별도의 위임입법 초안을 발표하여 영국에서 발행된 적격 스테이블코인(UKQS)이 지급결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매매·중개 규제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정부가 별도로 추진 중인 지급결제법제 개편이 완료되기 전까지 스테이블코인 지급결제 사업자가 이중의 인허가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이다. 한편, 2026년 6월 영국 상원 금융서비스규제위원회는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기다리며’라는 제목의 보고서¹⁰⁾를 통해 비례성 있는 스테이블코인 규제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보유한도, 무이자, 준비자산, 상환요건, 자기자본 규제에 관한 추가 논의를 촉구한 바 있다. 이처럼 영국은 EU에 비해 입법 착수는 늦었으나, 지급결제와의 접점을 실용적으로 조정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6) 이는 동일 스테이블코인(주로 EMT)을 EU 역내에서는 EU 인가를 받은 발행인(신용기관 또는 전자화폐기관)이, EU 역외에서는 제3국(주로 미국) 발행인이 각각 발행하되, 양쪽에서 발행된 토큰이 서로 완전히 대체가능(fungible)하도록 설계하는 구조이다. 즉 보유자 입장에서는 ‘하나의 코인’으로 보이고 실제로 상호 교환·이체가 자유롭지만, 그 이면에서는 준비자산이 EU 법인과 제3국 법인에 각각 별도로 보관·관리되는 구조이다. 가장 전형적으로 논의되는 실제 사례가 서클(Circle)의 USDC이다.

7) ECB는 2025. 4. 10 비공식 문건(non-paper)에서 제3국-EU 간 다중발행 구조가 현행 MiCAR상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FSC 14 April - item 1 - ECB Non-paper on EU and third country stablecoin multi-issuance, WK 4742/2025 COR 1, 10 April 2025).

8)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 (Cryptoassets) Regulations 2026.

9) FCA는 2026. 9. 30 ~ 2027. 2. 28 기간 동안 인가 신청을 접수하며, 실제 규제행위의 시행일은 2027. 10. 25이다.

10) House of Lords Financial Services Regulation Committee, Stablecoins: waiting for regulation, HL Paper 6, 3 June 2026.

다. 미국

(1) GENIUS법

미국은 2025년 7월 18일 결제형 스테이블코인에 특화된 GENIUS법(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Act)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연방 차원의 인가를 받은 발행인(은행 자회사 및 통화감독청 인가를 받은 비은행 신탁회사 등)과 발행규모가 100억달러 미만인 경우 주(州) 정부의 인가로 갈음할 수 있는 이원적 체계를 채택하고 있으며, 발행인에 대한 이자수익 지급을 금지하는 한편 발행잔액에 상응하는 준비자산의 보유와 정기적인 공시를 의무화한다. 그런데 관련 세부규정을 제정할 법정시한이었던 2026년 7월 18일이 지나도록 통화감독청(OCC),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재무부 등 관계기관의 최종규정이 완료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 법의 실제 시행일은 최종규정 공표 후 120일과 법 제정 후 18개월 중 빠른 날로 정해지는 규정에 따라 2027년 1월 18일로 사실상 확정된 상태이다.¹¹⁾

한편,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반(FinCEN)과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2026년 4월 자금세탁방지 및 제재 준수에 관한 규정안을 공동으로 발표하였고,¹²⁾ 통화감독청은 이자지급 금지의 해석 범위를 둘러싸고 별도의 논의를 진행하는 등 세부 이행규정을 둘러싼 쟁점이 다수 남아 있다. 아울러 외국에서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이 미국 시장에서 유통되기 위해서는 재무부의 상호인정(reciprocity) 결정이 필요한데, 2026년 하반기 현재까지 그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테더(USDT) 등 주요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의 미국 내 지위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이다.

(2) CLARITY법

한편, 스테이블코인을 넘어 디지털자산 시장구조 전반(예컨대,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간의 관할 배분, 이른바 디지털상품(digital commodity) 개념의 도입, 발행인의 공시의무, 탈중앙화금융(DeFi) 규율 등)을 규율하는 「디지털자산시장명확화법(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은 2025년 7월 294 대 134로 하원을 통과한 이후 상원에서 표류하고 있다. 상원 은행위원회는 2026년 5월 14일 15 대 9로 독자적인 수정안을 가결하였고, 이 법안은 이후 상원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나, 대통령을 비롯한 공직자의 디지털자산 발행·후원을 제한하는 윤리조항,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 대한 이자보상 지급의 허용범위, 그리고 은행권이 반대하는 예치형 상품의 규율방식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본회의 표결이 계속 지연되어 왔다.

2026년 9월 현재 기준, 상원은 이 법안에 대한 토론절차개시(cloture) 표결을 2026년 9월 15일로 예정하고 있다. 이는 법안 통과 여부를 직접 결정하는 표결이 아니라 상원이 이 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토론을 개시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절차적 표결로서, 필리버스터를 극복하기 위한 60표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 절차적 관문을 통과하더라도 실제 법안 가결까지는 추가적인 수정안 심의 절차가 남아 있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11) GENIUS Act (Public Law 119-27, 2025.7.18 제정). 법정 최종규정 제정시한은 2026. 7. 18이었으나 모든 관계기관이 이를 준수하지 못하였고, 시행일은 제20조에 따라 2027. 1. 18로 확정되었다.

12) FinCEN·OFAC, Permitted Payment Stablecoin Issuer Anti-Money Laundering/Counter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 Program and Sanctions Compliance Program Requirements, 91 FR 18582, 4. 10, 2026(의견수렴은 2026. 6. 9 마감됨).

상황에서 연내 입법 완료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것으로 평가된다.

라. 일본

그간 일본은 암호자산을 자금결제법(資金決済法)의 규율 대상으로 삼아 지급수단으로서의 성격에 주목하여 규제하여 왔다. 그러나 2025년 12월 발표한 금융심의회의 작업반 보고서¹³⁾는,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다수의 암호자산이 실질적으로 투자자산으로 기능하고 있음에도 자금결제법상 규율만으로는 투자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금융상품거래법(金融商品取引法, 이하 ‘금상법’)의 규율 대상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제안에 따라 2026년 4월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2026년 7월 15일 중의원(국회)을 통과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비트코인·이더리움을 포함한 약 105종의 암호자산이 금상법상 새로운 금융상품 범주로 편입되어, 발행 및 유통 단계의 공시의무, 불공정거래(내부자거래 등) 규제, 그리고 금융상품거래업자에 준하는 영업행위규제의 적용을 받게 될 예정이다. 세제 측면에서도 그동안 최대 55%에 이르던 종합과세 방식을 주식양도소득과 유사한 약 20%의 분리과세로 전환하는 세제개편이 함께 추진되고 있으며, 그 시행시기는 2028년 1월로 예정되어 있다. 이는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암호자산시장의 저변을 확대하려는 이중의 정책목표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스테이블코인은 금상법의 적용대상인 암호자산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어, 종전과 같이 지급수단으로서의 성격에 주목한 자금결제법의 규율을 계속 받는다. 이에 따라 2026년 6월 13일 시행된 개정 자금결제법은 신탁형 스테이블코인의 준비자산 운용 방식을 유연화하는 등 별도의 정비를 거쳤으며, 일본의 3대 대형은행인 미쓰비시UFJ, 미쓰이스미토모, 미즈호는 공동으로 엔화 연동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을 추진하여 2026년 중 실제 서비스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 금융청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2026년 8월 암호자산·스테이블코인 전담 부서를 신설하기도 하였다.

요컨대, 일본은 암호자산 일반은 증권에 준하는 투자자보호 규율로, 스테이블코인은 지급결제 규율로 이원화하는 방향으로 정리하고 있으며, 이는 앞서 살펴본 유럽연합, 영국, 미국이 스테이블코인을 핵심적인 규율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하면서도 암호자산 일반에 대하여는 지급결제가 아닌 증권규제의 틀을 선택하였다는 점과 독자적인 법률이 아니라 기존 법률의 틀 내에서 일반 디지털자산 규제를 규율한다는 점에서 주요국과 다른 독자적인 길을 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3. 주요국 디지털자산규제의 함의

이상에서 살펴본 유럽연합·영국·미국·일본의 최근 동향에서 다음과 같은 공통된 흐름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스테이블코인에 대하여는 국가를 불문하고 발행인의 진입규제를 엄격화하고, 준비자산의 안전자산 한정과 도산격리를 의무화하며, 이자수익 지급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수렴하고 있다.

13) 金融審議会, 暗号資産制度に関するワーキング・グループ報告, 2025. 12. 10(https://www.fsa.go.jp/singi/singi_kinyu/tosin/20251210/01.pdf).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일정은 예외 없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다. 유럽연합은 시행 2년 만에 전면적인 재검토에 착수하였고, 미국은 법정 하위규정 제정시한을 지키지 못한 채 시행일이 순연되었으며, 영국은 실질 시행을 2027년 이후로 예정하고 있고, 일본 역시 2027~2028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제도가 완성될 예정이다. 이는 스테이블코인 및 디지털자산 규제가 기술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결코 단순한 입법과제가 아님을 보여준다.

셋째, 각국이 채택한 규율의 축은 서로 다르다. 유럽연합과 영국은 독자적인 암호자산스테이블코인 전용 법제를 통해 규율하고, 미국은 스테이블코인(GENIUS법)과 디지털자산시장 구조(CLARITY법)를 별도의 법률로 분리하여 규율하며, 일본은 암호자산 일반을 기존 증권규제 체계(금상법)에 편입시키되 스테이블코인만은 지급결제법제에 남겨두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각국이 디지털자산을 무엇으로 성질결정하는지 — 새로운 유형의 금융상품인지, 지급결제수단인지 혹은 그 자체로 독자적인 규율영역인지 — 에 관한 인식의 차이를 반영한다. 다만, 스테이블코인이 지급결제만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님을 감안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

이러한 동향은 우리 기업과 우리나라의 입법 논의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먼저, 해외에서 디지털자산 관련 사업을 영위하거나 이를 계획하는 우리 기업으로서는 유럽연합의 MiCAR 인가, 영국 FCA의 신규 인가(2026년 9월 신청접수 개시), 미국의 연방-주 이원적 인가, 그리고 일본의 금상법상 금융상품거래업 등록 또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인 면허라는 서로 다른 인허가 체계를 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각국이 현재 규정을 계속 개정해 나가고 있는 만큼 다국적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유연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유통에 관여하고자 하는 기업이라면, 각국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이자지급 제한과 준비자산 규제, 그리고 외국발행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국내 유통 통제방식(현지법인 설립 요구, 상호인정, 등록 등)의 구체적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의 외국 진출과 관련해서는 국내 관련 법령의 미비로 사실상 해외진출이 막혀 있는 상태이므로, 우리나라의 디지털자산법 제정 논의 시 이에 관한 검토와 입법적 지원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결국, 디지털자산 및 스테이블코인 규제는 어느 국가에서도 아직 완성된 형태로 정착되지 못한 현재진행형의 과제이다. 우리 기업과 정책당국 모두 주요국의 규제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 